

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2025년 11월 21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55 호

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

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에 제1항의 제2호 다항 제1조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삭 제>
2.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제35조에 제1항 및 제3항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 결혼의 경우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

※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③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자녀 수에 1일 더한 일수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와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의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

제35조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직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일자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6항의 신설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일휴가를 부여한다.

소 관 부 서		경 영 기 획 실
입 안 자	직 위 성 명	경 영 기 획 실 장 과 성 우
	직 위 성 명	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
	담당자 성명 (전 화)	현 진 환 (3 9 0 - 7 6 4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2(근로제한) ① ~ ③ (생략)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u>40시간</u>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u>6시간</u>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p> <p>제27조(법정휴가) 가.~나. (생략)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u>12주 이상 15주 이내</u>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p> <p>제35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제17조2(근로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35시간</u> ----- ----- ----- ----- <u>5시간</u> ----- -----.</p> <p>제27조(법정휴가) 가.~나. (현행과 같음) 1. <삭제> 2. ----- <u>15주</u> 이내인 경우 : ----- -----</p> <p>제35조(특별휴가) ① ----- ----- ----- ----- . 또한, <u>경조사 관련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 결혼의 경우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u></p>

<p>② (생 략)</p> <p>③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u>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1. <u>영유아보호법에</u> 따른 어린이집, <u>유아교육법에</u>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p> <p>④~⑤ (생 략)</p> <p>⑥ <신 설></p>	<p><u>로 9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u></p> <p>※ <u>경조사 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연간 자녀 수에 1일 더한 일수의</u>----- ----- -.</p> <p>1. <u>영유아보육법에</u> ----- ----- ----- ----- ----- ---<u>와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의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 봐야하는 경우</u></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u>직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	--

[관계법령]

1.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2025. 2. 18.>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삭제 <2025. 2. 18.>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⑧ (생략)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⑪ ~ ⑮ (생략)

[참고사항]

□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⑱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5.02.07.)

(나)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다)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의 경우 원격지는 결혼식장을 기준으로 함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